



의료보험 GUIDE

(V)

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

- ☐1 : 치석제거, 치주치치 시행한 부위에 지각 과민 처치를 동시에 행할시의 진료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
- ☐2 : 치주질환 처치로 지각과민증이 있을 경우는 각각 100%씩 산정. 그러나 치주질환 처치시 지각과민증 처치를 일률적으로 산정시는 조정됨.
- ☐2 : 근관치료시 NaOCl(협약가 1근당 10원) 대용으로 사용된 유한락스에 대하여.
- ☐3 : 유한락스는 치료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NaOCl수가로 산정할수 없음. 기타 EDTA등을 사용할시는 구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수 있음.
- ☐3 : 유치 또는 영구치에서 인산세멘트를 영구충전재료로 산정 가능한지?
- ☐4 : 인산세멘을 영구 충전재료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아말감 또는 복합레진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함.
- ☐4 : 영구치, 유치에서 Non-vital pulpotomy

술식의 적응증 및 시행시 숫가 준용항목에 대하여.

- ☐5 : 영구치 유치에서의 Non-vital pulpotomy시 행시는 술식에 따라 chamber opening (보통치치)이나 pulpotomy로 산정할수 있다.
 - ☐5 : 발수와 절개후 근관치료와 후처치 동시 시행시 산정방법에 대하여
 - ☐5 : 근관치료와 후처치 동시 시행시 차-11 근관치료 주 : 1에 의거 근관치료수가만 100% 산정할수 있다.
*주1 내용 : 환치에 기인한 치근막염의 처치 및 수강내의 누공에 대한 처치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- 그러나 치수강 개방 및 절개후 보통치치와 후처치 시행시는 보통치치와 후처치 수가 중 높은수가 100%, 낮은수가 50%로 산정할수 있다.

